

프랑스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 : PPE

Henri Sterdyniak (프랑스 경제동향연구소(OFCE) 경제학자, Paris-Dauphine 대학 교수)

■ 머리말

200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는 비숙련근로자들의 높은 실업률 문제(2002년 현재 11.8%)가 사회경제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단기 계약직과 파트타임 일자리의 증가로 '근로빈곤' 가정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실업자들의 최저 수입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숙련근로자들이 굳이 최저수당을 받으면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할 경제적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숙련근로자들이 계속 실업자로 남게 되는 '실업의 덫'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는 비숙련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근로행위를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2001년 2월 환급 가능한(refundable)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Prime pour l'emploi, PPE)를 도입했다. 그 후 2003년에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이끄는 우익정부에 의해 이 제도의 원칙 수정이 단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PPE)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본 후, 이 제도가 어떤 실효를 거두었으며, 어떻게 실업자들을 작업장으로 복귀시켰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PPE)에 대한 비판 의견을 살펴보고,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비숙련 실업자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프랑스 경제학자들은 세 부류로 나뉜다. 일부 학자들은 프랑스가 직업기술의 전 단계에 걸쳐 부정적인 고용격차(negative employment gap)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비숙련근로자의 높은 실업률만큼 숙련근로자의 자격 과잉(de-qualification)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비숙련근로자 보다 '과잉'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비숙련근로자의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이 해결방안이며, 이에 따라 1997년과 2001년 사이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총 고용의 9%). 이렇게 되면 비숙련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따로 필요하지 않게 된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프랑스 내에서 비숙련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기술의 발달과 자본 노동간의 상충관계와, 저임금 신흥시장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비숙련직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볼 때 최저임금(SMIC)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고의 해법은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모든 사람이 숙련기술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해법은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보장분담금(social contribution) 비중을 낮춰 저숙련 노동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전략은 1985년 이후 프랑스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2005년에는, 기업들에게 최저임금(SMIC) 기준 총 40%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한 환급 혜택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18.6% 낮추게 되었다. 환급 비율은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며,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6배(1.6SMIC)일 때 0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이 특히 부담스럽다. 2004년 프랑스 정부 예산에서 150억 유로(전체 GDP의 1%)가 이러한 환급에 소요되었는데, 이를 통해 40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한다.

1987년에 로카르(Rocard) 정부는 최저소득보조금(Revenu Minimum d'Insertion, RMI)을 도입했다. 최저소득보조금(RMI)은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실업자들에게 가족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차별화된 사회보장 혜택이다. 원칙적으로 다시 직장에 복귀하고자 희망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이런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최저임금제(SMIC)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저소득보조금(RMI) 또한 그보다 크게

낮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최근, 프랑스 기업들은 비숙련근로자들에게 갈수록 많은 파트타임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작업조직(work organisation)이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노동시장 상황으로 말미암아, 예전 같으면 실업상태로 남아 있었을 근로자들을 기업이 훨씬 수월하게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0.5배(0.5 SMIC)의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이 최저소득보조금(RMI)보다 낮다는 것이다 : 이들에게 근로행위는 별 보상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 번째 부류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실업의 덫' 이야말로 프랑스의 고실업률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최저소득보조금(RMI) 수혜자의 대부분은 최소한의 한계 수입을 주는 일자리를 찾느니 차라리 최저소득수당을 받기를 선호한다. 따라서, 최저소득보조금(RMI)을 받는 실업자들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근로임금(최저임금 수준 또는 최저임금의 1/2)이 최저소득보조금(RMI)보다 높아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는 실업자들이 일을 하게끔 하는 인센티브일 뿐만 아니라, 공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즉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주어져야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때 두 가지의 선택안이 가능하다: 하나는 최저소득보조금(RMI)을 폐지하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고실업 상황에서 상당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주창된 적이 없다; 다른 하나는 비숙련 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인 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소득보조금(RMI)과 최저임금(SMIC) 간의 격차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최저소득보조금(RMI)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라도 일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 한편, 파트타임 최저임금(SMIC) 일자리(판매원이나 계산원 등)가 큰 인기를 모은 것을 보면,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부족이 문제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비숙련 실업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최저소득보조금(RMI)을 받지 않으면서 자립한다는 일차 목표하에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허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회보장수당을 받기보다는 임금이 낮더라도 일을 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노후를 대비한 연금 혜택, 사회생활, 고용전망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실업 상황에서 이런 예외는 전체 고용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친다. 문제는, 프랑스 경제가 고속 성장한 1997년과 2001년 사이 노동력 부족 현상은 특정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에서만 발생했지,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일자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숙련 노동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프랑스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면, 기술이 없는 근로자를 일자리로 복귀시킨다고 해도 상황이 호전될 리 없다.

■ 근로소득세액공제(PPE)는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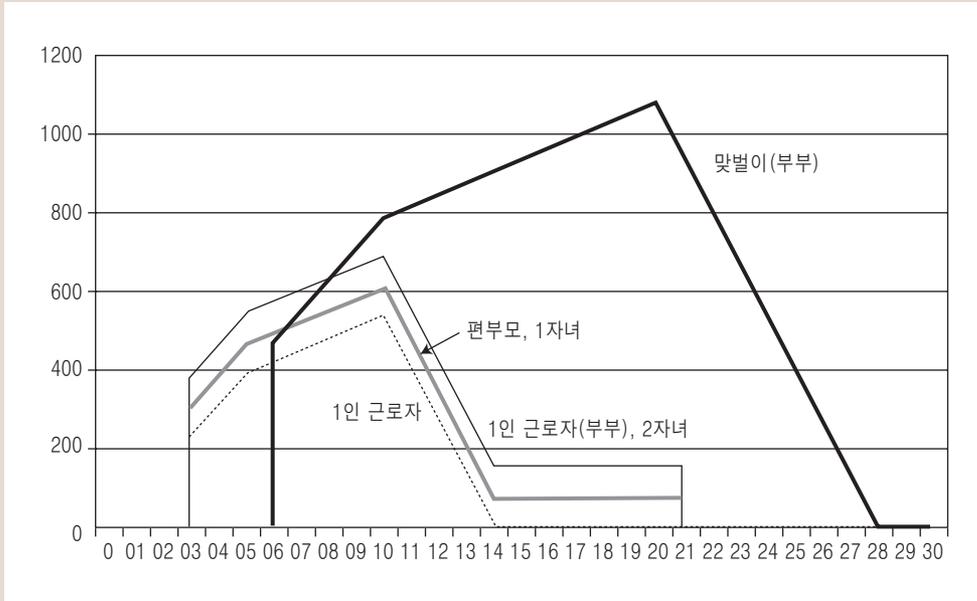
근로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정책이 1998년에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최저소득보조금(RMI) 인센티브제도(intéressement)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최저소득보조금(RMI)의 수혜자들이 직업을 가진 후 1년까지는 계속해서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한 제도다. 즉 취업 후 1년까지는 그들 수입의 반만 최저소득보조금(RMI) 계산 시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 있는 성인 한 명의 경우 이렇게 하면 파트타임 일자리에 있는 소득이 언제나 최저소득보조금(RMI)보다 높아지게 되고, 풀타임 소득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는 일시적으로만 주어지고 1년이 지나면 최저소득보조금(RMI)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족의 수입은 다시 줄게 된다; 그 뒤 다시 이런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최저소득보조금(RMI)으로 다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1년 조스팽 정부는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방안들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최저소득보조금(RMI) 수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혜택들을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지급하도록,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s), 주민세(dwelling tax), 소득세(income tax) 등을 개정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PPE)를 도입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혜택(refundable tax credit) 제도다. PPE는 과세연도(year t)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차기 과세연도(year t+1) 10월에 납부한다(납세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PPE) 법안은 매우 복잡하다.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11,689유로/년)만큼은 임금의 4.6% 또는 최대 538유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1,689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 단계별로 11%씩 감소하는 세액공제(PPE)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6,364(또는 최저임금의 1.4배) 유로에서 세액공제액은 0이 된다. 파트타임 일자리의 경우도 풀타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액공제(PPE) 혜택이 적용된다. 풀타임 임금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PPE)을 산출하고 이를 일한 시간 수에 비례해 계산하면 된다. 2003년 세제 개편 이후, 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PPE)은 45% 증가했다([그림 1]참조). 주당 12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PPE) 액수는 개인별로 산출되지만, 상한액은 가구당 수입이 기준이 된다. 또한 남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여성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인센티브 측면에

[그림 1] 근로소득세액공제액(PPE) (단위: 유로, 1년 기준, 2005년)



* 2인 근로자 가족의 경우 수입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

서 보았을 때, 이런 제2의 소득원들은 노동시장 활동의 덫(activity trap)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표 1 참조).

세액공제시 가족항목도 있으나 금액이 매우 작고 임의적이다.: 즉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81 유로/년, 자녀당 34 유로, 편모/편부인 경우 첫째 자녀에 한해 68 유로가 제공된다. 모든 직접세 산출 시 가정의 상황이 참작 되어야 한다는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의 요구사항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수용되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PPE)의 효과

아래 <표 1>은 2005년 현재 일자리를 얻었을 때의 소득 증대분을 나타낸다. 복잡한 프랑스 제도의



특성상, 그리고 최저소득보조금(RMI)의 원칙이 가족수당제도(family allowance)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월 소득 증대분은 사례별로 편차가 크다. 가정의 제1 소득자의 경우 소득 증대분이 언제나 제한적이며, 개인의 경우에도 미미하지만, 제2 소득자의 경우는 매우 크다. 가치값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PPE)가 상황을 크게 바꾸지는 못한다. 또한, 한 가정의 제1 소득자의 경우 최저소득보조금(RMI)을 벗어나 최저임금(SMIC) 일자리를 갖는다고 해도, 소득상 큰 변화는 없다. 한 가정의 제1 소득자가 최저임금의 0.5배인 일자리를 갖는 것도 큰 혜택이 없다; 독신자의 경우는 약간 나은 혜택이 주어진다. 한 가정의 제2 소득자가 일하는 경우에는(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항상 큰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의 경우에만 근로소득세액공제(PPE)를 통해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긴다고 할 수 있으며, 두 부부 모두 최저임금을 버는 가정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표 1〉 2005년 현재 근로를 통한 소득증대

(단위:유로,월)

	최저소득보조금(RMI)에서 1/2 최저임금(SMIC)일자리로			최저소득보조금(RMI)에서 최저임금(SMIC)일자리로		
	PPE이전	PPE 시행시	Int.	PPE이전	PPE시행시	Int.
1인 0 자녀	72	103	281	409	446	446
1인 1 자녀	51	87	289	422	464	464
1인 2 자녀	143	183	293	520	566	566
부부 0 자녀 ; NW	0	38	291	266	310	549
부부 1 자녀 ; NW	0	41	294	224	271	554
부부 2 자녀 ; NW	0	44	297	234	284	556
부부 3 자녀 ; NW	0	42	316	387	439	557
부부 0 자녀 ; SMIC	364	388	149	806	836	597
부부 1 자녀 ; SMIC	320	344	61	731	761	478
부부 2 자녀 ; SMIC	339	363	92	679	709	438
부부 3 자녀 ; SMIC	369	389	272	727	757	639

비고: 이탤릭체로 표시한 것은 파트타임 일자리로 200 유로 미만의 소득이 생긴 경우와 풀타임 일자리로 400 유로 미만의 수입이 생긴 경우. NW: 일하지 않는 배우자; SMIC 남편이 이미 일을 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Int: 최저소득보조금(RMI) 인센티브제도(interissement) 또는 IA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PPE)에는 연 25억 유로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주로 소득 10분위 중 2, 3, 4분위에 해당되는 940만 가구에 혜택을 주었다. 실업자를 포함하는 제1분위는 이 제도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PPE)는 최저임금의 0.3배에서 1배(0.3 to 1 SMIC) 사이에 공제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원칙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실업률이 높은 기간 동안에는 실업이 고의적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세액공제가 풀타임 일자리를 가진 비숙련근로자와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거나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를 강화시켜야 하는가? 최저임금(SMIC)을 받고 있는 A씨와 B씨의 경우를 비교해 생각해 보자. B씨는 해고를 당한 후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가 직장을 못 구해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 요행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A씨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액공제(PPE)는 최저소득보조금(RMI)과 최저임금(SMIC)간의 격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좀처럼 최저소득보조금(RMI)을 인상시키려 하지 않는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저임금(SMIC)에 연동해 최저수입(RMI)을 인상하려 들지 않고, 소비지수에만 연동시키려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한 자녀 또는 두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PPE) 시 자녀에 대해 주어지는 얼마 되지 않는 혜택만으로 이러한 개혁을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녀를 고려한 세액공제 혜택의 폭을 늘려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완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완책은 세 자녀 이상을 둔 저소득 가정에 국한되어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PPE)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 급여가 월 단위로 지급되는 반면, 세액공제 혜택은 연 단위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에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2006년 10월이 나 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하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PPE)는 안 그래도 복잡한 프랑스의 조세 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최저소득보조금(RMI)과 '변변치 못한 일자리' 사이를 오가며, 최저소득보조금(RMI) 인센티브 제도와 주택보조금(housing benefit)제도 등의 잦은 제도 변경은, 영문도 모르고 수입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외국의 세액공제에 비해 그 액수가 적다는 점이다: 두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 1,132유로임에 비해, 미국은 4,200달러(약 31,000 유로), 영국은 6,240파운드(약9,000 유로)이다.

비숙련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PPE)의 영향은 아직까지 측정된 바 없다. 시뮬레이션 미



시계량 모델에 근거한 사전적 분석에 의거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PPE)제도는 일부 소수의 실업자(약 10,000명 정도)를 일자리로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한다. 오히려 일부 기혼여성의 경우는 이 제도 때문에 풀타임 일자리를 떠나 파트타임 일을 찾게 되거나(약 5,000명), 아예 직장을 떠날(약 5,000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기혼여성이 일을 할 경우 오히려 그 가정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PPE)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근로소득세액공제(PPE)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근로소득세액공제(PPE)는 너무 복잡하기만 하고 근로를 유도하는 진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PPE)를 일단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한다. 즉,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일자리에 대해 약간이나마 세제 혜택(small allowance)을 주고, 가구당 총 수입에 대한 상한선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PPE)의 가장 만연한 문제, 즉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다는 점과 기혼여성의 근로에 대해 역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는 문제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또 일부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PPE)를 기업가들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고용주가 각 근로자들의 가정형편과 그들 배우자의 수입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PPE)를 개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제도를 저임금에 대한 보조금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즉 시간당 수단에 의거해 최대 수혜액은 최저임금(SMIC)과 같게 하고 시간당 최저임금(SMIC)의 1.4 배일 때 수혜액이 0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후 근로소득세액공제(PPE)액을 월급과 함께 매달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PPE)제도는 소득의 재분배 목표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비숙련근로자를 일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인센티브만을 제공한다. 또한 남편(아내)의 소득과 상관없이 시간당 수당이 낮은 아내(남편)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낳는다. 급여에 부과해 혜택(allowance on wages)을 줄 경우 급여 인하 압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런 혜택은 파트타임 일자리에 별로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혜택은 기존의 사용자 사회보장분담금 환급제도(employers' contributions rebates)와 너무나 흡사하다: 즉, 비숙련 근로자에 대해 보조금 6%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SMIC)이 6% 인상되는 것과 같고, 이는 동시에 사용자의 분담금 환급(employers contributions rebate)이 6% 증가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개혁방안은 최저소득보조금(RMI) 인센티브제도(interessement), 즉 소득수당(Income Allowance (IA))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때 소득수당은 한 가구의 총수입을 근거로 산정된다. 예를 들면 $IA = RMI - 50\% * WE - OI$, 여기서 IA는 수당이고, RMI는 수입이 없는 가정에 지급되는 최저 소득보장금, WE는 급여소득, OI는 기타수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기 급여의 50%를 언제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득수당(IA)은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지급하는 행정기관에 의해 매월 지급된다. 그리고, 이 해당기관은 수혜를 받는 저소득 가구의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최저소득보조금(RMI)나 주택수당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생기는 수익이 파트타임을 포함해 상당한 수준이 된다(표 1 참조). 이런 소득수당은 저소득 가정의 수입을 상당히 향상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도 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파트타임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저숙련 부부의 경우 배우자 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고용주의 사회보장분담금 환급(employers' social contributions rebates)과 저숙련근로자에 대한 수당에 역점을 두는 방법을 쓰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저숙련 노동비용(최저임금(SMIC)에서 분담금환급액을 공제)과 근로자의 수입(최저임금(SMIC)과 근로소득세액공제액(PPE)의 합계액)이 서로 연동되지 않을 수(disconnect) 있게 된다. 즉 저소득 근로자는 일하는 데 대한 보조금을 받고, 고용주는 그들을 고용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은 저숙련근로자를 고용할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금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저임금 일자리가 창출될 위험성이 있긴 하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고용이 이루어진 후에는 고용주 입장에서 임금인상 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려 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저소득의 함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KL**